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26. 4. 24.〉

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

후보자	①선거명		②선거구명	
	③소속정당명		④성 명	

⑤첨부서류 : □ 본인 등의 병역사항(별지)
□ 병적증명서 ○부
□ 복무확인서 ○부

본인은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위 후보자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: 1. 무소속후보자는 "③소속정당명"란에 "무소속"이라 기재합니다.
2. "본인 등의 병역사항(별지)"은 발급받은 "병적증명서" 또는 "복무확인서"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
〈별 지〉

본인 등의 병역사항

①소속정당명		②선거명 및 선거구명		③성 명	

④본인과의 관계	⑤성 명	⑥생년월일	⑦병역사항	⑧비고

본인 등의 병역사항 작성요령

①항 "소속정당명"란에 무소속후보자는 "무소속"이라 기재합니다.

②항 "선거명 및 선거구명"란은 대통령선거,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

③항 "성명"란은 신고의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.

④항 "본인과의 관계"란은 본인과 배우자(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) 및 직계비속(외손자 포함)을 구분하되, 직계비속(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)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. 다만,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남자는 제외합니다.

"기재요령"

1. 본인, 배우자, 아들, 손자, 외손자로 구분
2. 아들의 경우에는 "장남, 차남, 3남" 등으로 기재
3. 손자, 외손자의 경우에는 "손자, 외손자"로만 기재

⑤항 "성명"란은 신고대상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.

⑦항 "병역사항"란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, "군번"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

⑧항 "비고"란은 신고의무자가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배우자, 직계비속의 질병명·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"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"라고 기재합니다.